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삼성SDI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4. 5. 6.>

제 3 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신설 2004. 5. 6.>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04. 5. 6.>
- ③ 위원회는 제 1 항과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4. 5. 6.>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 ①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04. 5. 6.>
-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6. 7. 30.>
- ③ 위원 중 1 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4. 5. 6.>

제 5 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 9 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독립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30.>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신설 2004. 5. 6.>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5. 6.>

제 6 조 (해 임)

- ①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2.19>

- ② <삭제 2004. 5. 6.>

제 3 장 회 의

제 7 조 (감사위원회)

매 분기 1 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제 8 조 (감사위원회의 소집)

-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결의 방법)

- ①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3. 15.>

- ② 감사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15.>

-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2. 19>

제 4 장 업무범위

제 10 조 (권 한)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항으로 한다. <개정 2004. 5. 6.>

- ① 업무감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다.

② 영업보고요구 및 업무재산 조사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이사보고의 수령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자회사에 대한 조사

모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을 시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각종의 소권

감사위원회는 총회결의 취소, 신주발행 무효, 감자 무효, 합병 무효 등 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주주총회 소집청구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⑨ 외부감사인 선임, 해임 요청에 관한 권한 <개정 2019. 2. 19>

- ⑩ 회사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및 재지정 요청 승인에 관한 권한 <신설 2019.2.19.>
- ⑪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 승인 <신설 2019.2.19.>
- ⑫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에 관한 권한

제 11 조 (의 무)

감사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

① 선관주의 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록의 작성 의무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6 주 전에 이사로부터 제출 받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총 1 주 전까지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가 법령, 정관 및 회계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개정 2013. 3. 15.>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가 법령, 정관 및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작성된 경우 그 뜻과 이유
<개정 2013. 3. 15.>
5.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 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6.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

1. 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9.>
3. 위원회는 위의 2 호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9.>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위 사항이 준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9.>
- ⑦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평가의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

제 5 장 기타사항

제 12 조 (의사록)

감사위원회는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무국 및 간사)

- ① 감사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사무국 내에 간사를 두어 감사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 14 조 (경 비)

감사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 15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년 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년 5 월 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4 조 제 2 항, 제 5 조 제 1 항 개정 규정은
2026 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서기 2000 년 3 월 16 일 제정

서기 2002 년 1 월 16 일 개정

서기 2004 년 5 월 6 일 개정

서기 2013 년 3 월 15 일 개정

서기 2019 년 2 월 19 일 개정

서기 2026 년 7 월 30 일 개정